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0.

발 의 자 : 한창민 · 용혜인 · 서미화
윤종오 · 전종덕 · 황운하
김재원 · 전용기 · 신장식
정혜경 · 백승아 · 백선희
김종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사기 피해자는 30,400명,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(2023. 6. 1. ~ 2025. 5. 31, 국토부).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·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,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.

이에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).

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·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.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,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

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3호).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유사수신행위 또는”을 “유사수신행위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,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

별표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범죄피해재산”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·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「형법」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, 제347조의2 및 제351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에 해당하는 죄[「형법」 제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,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유사수신행위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

매의 방법으로 기망(欺罔)하여 범행한 경우 및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특정사기범죄”라 한다)로 한정한다]와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중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 및 제351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에 해당하는 죄(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) 나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5. (생략)	<u>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,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</u> 4. 5. (현행과 같음)
---	--